

3. 무역협정 - 한·EU FTA

□ 농산물 양허

1.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

-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
-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
 -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, 현행관세 유지, 계절관세도입, 10년 초과 장기 철폐,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.
-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
 -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.

<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, 한/미 FTA와의 비교 >

양허 유형	한/EU FTA				한/미 FTA			
	한국양허		EU양허		한국양허		미국양허	
	품목(%)	수입액%	품목(%)	수입액%	품목(%)	수입액%	품목(%)	수입액%
즉시	42.1	19.5	91.8	88.3	37.8	55.3	58.7	8.2
2-3년	1.2	17.9	0.5	0.9	2.5	0.2	0.6	0.1
3년내	43.3	37.4	92.3	89.2	40.3	55.5	59.3	82.1
5년	19.2	27.9	5.8	10.3	22.0	11.9	22.1	2.0
5년내	62.5	65.3	98.1	99.5	62.3	67.4	81.4	84.2
6-7년	3.3	4.1	-	-	2.9	4.1	5.1	13.8
10년	19.9	21.9	-	-	22.5	4.7	9.9	2.0
10년초과	11.5	8.5	-	-	10.2	15.7	3.6	0.0
양허제외 현행관세	2.8	0.2	1.9	0.5	2.0	8.1	-	-
합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* 농업세이프가드,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

자료기입일 : 2013년 1월 18일

2.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

- 쌀 및 쌀 관련 제품(16개 세번)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
-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
 - * 현행관세 유지, 수입쿼타
 - 감귤(온주밀감), 고추, 마늘, 양파 : 현행관세유지
 - 분유, 천연꿀, 오렌지(성출하기) :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
 - * 계절관세 : 우리나라 수확·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
 - 포도(5월~10월 15일), 오렌지(9월~2월)
 - * 세번분리 :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
 - 사과 :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(24년간 세이프가드),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(11년간 세이프가드)
 - 배 : 동양배 품종은 20년간,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
 - * 농산물 세이프가드 :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
 - 쇠고기, 돼지고기, 사과, 설탕, 인삼, 맥아·맥주맥, 발효주정, 변성전분, 감자전분 등 9개 품목
-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,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
 - * 돼지고기 :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
 - 냉동 삼겹살 : 10년, 냉동 기타부위 : 5년 관세철폐

-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: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

* 낙농제품 : 양허기간 장기화

- 전·탈지 분유 :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
- 치즈 :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

○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

- 포도주, 홍차, 커피, 아몬드,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

3.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

○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

- EU측은 품목수 기준 98.1%, 한국 수입액(우리의 대EU 수출액) 기준 99.5%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

○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

- EU측 품목수 기준 91.8%, 대EU수출액 기준 88.3%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

- 음료(0-33.6%), 면류(복합세), 간장(7.7%), 비스켓(복합세) 등

○ EU측은 쌀,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

-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,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
- 쌀 및 쌀 관련 제품(39개 세번,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)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
- 품목수 기준 1.9%, 대EU 수출액 기준 0.5%
-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(16개 세번)의 경우, 기존 시장진입 가격제도를 유지
- 토마토, 호박, 감귤, 복숭아, 자두 등

* 시장진입가격제도 :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

□ 수산물 양허

1.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

○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

-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,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

○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

-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

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

○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

-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

<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, 한/미 FTA와의 비교 >

양허 유형	한/EU FTA				한/미 FTA			
	한국양허		EU양허		한국양허		미국양허	
	품목(%)	수입비(%)	품목(%)	수입비(%)	품목(%)	수입비(%)	품목(%)	수입비(%)
즉시	12.3	6.8	40.8	25.3	14.2	1.5	72.8	82.5
2-3년	31.9	20.3	31.8	69.7	40.7	37.4	7.2	5.1
3년내	44.2	27.1	72.6	95.0	54.9	38.9	80.0	87.5
5년	23.0	50.9	27.4	5.0	7.6	25.9	3.6	0.1
5년내	67.2	78.0	100.0	100.0	62.5	64.8	83.6	87.7
6-7년	4.4	0.2	-	-	0.2	0.0	-	-
10년	27.2	6.2	-	-	36.3	30.2	16.4	12.3
10년초과	0.5	15.4	-	-	1.0	5.0	-	-
양허제외 현행관세	0.7	0.2	-	-	-	-	-	-
합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자료기입일 : 2013년 1월 18일

2.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

○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

- 냉동 오징어, 냉동 명태, 냉동 민어 : 현행관세 유지

- 냉동 고등어, 냉동 기타넙치 : 12년 철폐

- 냉동 불락, 냉동 가자미, 게살, 꽃게 : 10년 철폐

-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
-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(품목수 기준 12.3%, 수입액 기준 6.8%)

3.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

-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
 -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
 -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(품목수 기준 72.6%, 대EU수출액 기준 95%)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
 - 냉동 황다랑어(조제용), 냉동 새우, 냉동 가다랑어, 냉동 갑오징어, 냉동 대구 등 : 즉시철폐
 - 연육 조제품, 냉동 기타조개, 냉동 꿀뚜기, 냉동 문어 등 : 3년 철폐
-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양허

< 식량 작물 >

품목	양허 내용
쌀	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
대두	콩나물용 대두의 현행관세(487%) 유지를 조건으로, 채유 및 박용은 5년 철폐 - 콩나물용(487%) : 현행관세 유지 - 채유 및 박용(487%) : 5년 철폐
감자	신선 및 냉장 감자의 현행관세(304%) 유지를 조건으로, 종자용 감자는 10년철폐, 냉동 감자는 5년 철폐 - 신선 및 냉장(304%) : 현행관세 유지

	- 종자용(27%) : 10년 철폐 - 냉동(27%) : 5년 철폐
보리	겉보리 및 쌀보리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, 맥주맥 및 맥아는 15년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쿼타 제공 - 겉보리(324%) 및 쌀보리(299.7%) : 현행관세유지 - 맥아(269%)+맥주맥(513%) : 15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 쿼타 제공 10,000톤(1년차) ~ 17,164톤(15년차)
옥수수	식용과 종자용을 구분 철폐 - 팝콘용(630%) : 13년 철폐 - 종자용(328%) : 5년 철폐
전분	15년 또는 12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쿼타 제공 - 감자전분(455%) : 15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 - 옥수수전분(226%), 매니옥전분(455%), 고구마전분(241.2%) : 15년 철폐 - 변성전분(385.7%) : 12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쿼타 제공 28,000톤(1년차) ~ 44,337톤(12년차)
기타	15년 철폐 - 녹두(607.5%), 팥(420.8%), 메밀(256.1%), 대추(611.5%), 밤(219.4%), 잣(566.8%), 발효주정(270%), 타피오카(887.4%)

< 육 류 >

품목	양허 내용
쇠고기	○ 민감한 6개 세번(40%) : 15년 철폐,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* 도체와 이분도체(냉장 및 냉동), 부분육(냉장 및 냉동) -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: 9,900톤(1년차) → 13,062톤(16년차, 매년 2% 증량) -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: (1 ~ 6년차까지) 실행세율을 적용 → (7 ~ 11년차) 실행세율의 75% → (12 ~ 16년차) 실행세율의 60% ○ 육우(40%)와 식용설육(족 · 꼬리 등)(18%), 쇠고기 가공품(72%) 등 : 15년 철폐
돼지고기	○ 냉동 삼겹살(25%) : 10년 철폐 ○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(갈비·목살 등)(22.5%) : 10년 철폐, 11년간 세이프가드 적용 ○ 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 : 5년 철폐 *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, 넓적다리살, 어깨살, 갈비·목살(25%) *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, 넓적다리살, 어깨살(22.5%) ○ 냉동 족(18%), 돼지고기 밀폐가공품(30%) : 6년

	○ 식용설육(18 ~ 30%), 소시지(30%),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(27 ~ 30%) : 5년 철폐
닭고기	○ 민감한 2개 세번 : 13년 철폐 * 냉동 가슴살 및 날개(20%) ○ 냉장육(18%), 냉동(다리)(20 ~ 22.5%) : 10년 철폐 ○ 삼계탕(30%) : 10년 철폐
계란	○ 계란(41.6%), 전란액(27%) : 15년 철폐 ○ 난황(27%) : 13년 철폐 ○ 종란(27%) : 10년 철폐
기타육류	○ 오리고기(18 ~ 22.5%) : 냉장육 10년 철폐, 냉동육 13년 철폐 ○ 산양·면양고기(22.5%) : 10년 철폐 ○ 칠면조고기(18%) : 7년 철폐 ○ 녹용·녹각(20%) : 15년 철폐

< 낙농품, 꿀, 사료 >

품목	양허 내용
연유 발효유	○ 탈지분유·전지분유(176%)·연유(89%) : 현행관세 - 무관세쿼타 제공 1천톤(매년 3% 증량) ○ 혼합분유(36%) : 10년 철폐 ○ 조제분유(36 ~ 40%) :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제공 450톤(매년 3% 증량) ○ 발효유(36%) : 10년 철폐
치즈 (36%)	○ 체다치즈: 10년 철폐 ○ 체다 이외의 치즈 : 15년 철폐 ○ 치즈 무관세쿼타 제공 4,560톤(매년 3% 증량)
밀크와 크림 (36%)	○ 10 ~ 15년 철폐 - 지방함량 6% 이하 : 15년 철폐 - 기타 지방함량 6% 초과 : 13년 철폐 - 냉동크림 : 10년 철폐
버터 (89%)	○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350톤(매년 3% 증량)
유장 (49.5%)	○ 식용 :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3,350톤(매년 3% 증량) ○ 사료용 : 즉시 철폐
꿀	○ 천연꿀(243%) : 현행관세, 무관세쿼타 50톤(매년 3% 증량)

	○ 인조꿀(243%), 로얄제리(8%), 벌꿀조제품(8%) : 10년 철폐
사료품목	○ 사료용 근채류(100.5%) : 15년 철폐 ○ 보조사료(50.6%) : 12년 철폐 - 무관세쿼타 5,500톤(매년 3% 증량) ○ 사료용 옥수수(328%) : 5년 철폐

< 과일, 과채류 >

품목	양허 내용
감귤류 (144%)	○ 감귤(온주밀감) : 현행관세(144%) 유지 ○ 맨더린, 클레멘타인 : 15년 철폐
오렌지 (50%)	○ 감귤 성출하기(9 ~ 2월) : 현행관세(50%) 유지 - 무관세쿼타 제공: 20톤(1년차) → 60톤(11년차) (이후 고정) ○ 감귤 비출하기(3 ~ 8월) : 관세 30%에서 시작하여 7년철폐
사과(45%)	○ 후지 계통 품종 : 20년 철폐, 세이프가드 24년 적용 ○ 기타 품종 : 10년 철폐, 세이프가드 11년 적용
배(45%)	○ 동양배 품종 : 20년 철폐 ○ 기타 품종 : 10년 철폐
포도(45%)	○ 성출하기(5월 ~ 10.15) : 17년 철폐 ○ 비출하기(10.16 ~ 4월) : 관세 24%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
키위(45%)	○ 15년 철폐
복숭아, 단감 (45%)	○ 10년 철폐
딸기	○ 신선(45%) : 10 ~ 12년 철폐 * 초본류 딸기 : 10년 철폐, 나무딸기 : 12년 철폐 ○ 저장(30 ~ 45%) : 즉시 ~ 7년 철폐 * 일시저장처리 : 즉시 철폐, 조제저장처리 : 7년 철폐 ○ 냉동(30%) : 5년 철폐
토마토	○ 신선 및 냉장(45%) : 7년 철폐 ○ 토마토 주스(30%), 소스 : 5년 철폐 ○ 토마토 케첩(8%), 페이스트(5%) : 즉시 철폐
오이	○ 신선 및 냉장(27%) : 즉시 철폐 ○ 일시저장처리(30%) : 10년 철폐
호박	○ 신선 및 냉장(27%) : 즉시 철폐

	○ 건조(30%) : 10년 철폐
가지(27%)	○ 즉시 철폐
수박(45%)	○ 12년 철폐
멜론(참외 포함) (45%)	○ 12년 철폐 (껍질은 즉시 철폐)

< 암념채소, 인삼, 특작 >

품목	양허 내용
고추	○ 핵심 4개 세번(270%) : 현행관세 유지 - 신선 및 냉장 고추, 건조고추, 고춧가루 등 ○ 냉동고추(27%) : 15년 철폐
마늘	○ 핵심 4개 세번(360%) : 현행관세 유지 - 신선 및 냉장 마늘·일시저장처리 마늘·건조마늘 ○ 냉동마늘(27%) : 15년 철폐 ○ 조제저장처리 마늘(30%) : 10년 철폐
양파	○ 신선 및 건조 양파(135%) : 현행관세 유지 ○ 냉동양파(27%) : 12년 철폐 ○ 조제저장처리 양파(30%) : 5년 철폐
생강	○ 신선 생강(377.3%) : 18년 철폐 ○ 설탕저장처리 생강(30%) : 5년 철폐
파	○ 건조 파(30%) : 7년 철폐 ○ 조제저장처리 쪽파(30%) : 5년 철폐 ○ 쪽파·기타파속채소(27%) : 즉시 철폐
인삼	○ 핵심 7개 품목(222.8 ~ 754.3%) : 현행관세 유지 - 수삼 및 홍삼·백삼 등 뿌리삼류(본삼, 미삼, 잡삼) ○ 홍삼가공품 6개 품목(754.3%) :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9년간 적용 - 홍삼엑스, 홍삼엑스분, 타블렛 및 캡슐 등 ○ 인삼가공품 2개 품목(20%) : 13년 철폐 - 인삼엑스, 인삼엑스분 등 ○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 : 10년 철폐 - 인삼차, 홍삼차 등
땅콩	○ 땅콩(230.5%) : 18년 철폐 ○ 땅콩 조제품(50 ~ 63.9%) : 10년 철폐

참깨	○ 참깨(630%) : 18년 철폐
참기름	○ 참기름(630%) : 18년 철폐

< 엽근채류 >

품목	양허 내용
당근(30%)	○ 5년 철폐 (건조는 7년, 일시저장처리 10년)
무(30%)	○ 10년 철폐 (건조는 7년)
배추 (27%)	○ 5년 철폐 (케일 등은 즉시)
양배추 (27 ~ 30%)	○ 즉시 철폐 (건조 양배추는 10년)
기타채소	○ 채소쥬스 : 5년 철폐 ○ 채소류 혼합물 : 즉시 철폐 ○ 냉동·일시저장처리 : 즉시 철폐 ○ 조제저장처리·설탕저장처리 : 5년 철폐 ○ 건조는 7년, 신선/냉장은 10년 철폐
기타	○ 토란줄기(건조) 10년 철폐, 고구마줄기(건조) 7년, 칩줄기 및 뿌리 5년, 연뿌리(설탕저장처리) 5년

< 가공식품 >

품목	양허 내용
설탕	○ 향미 또는 착색제가 가미된 것 : 현행관세 유지 ○ 기타 : 16년 철폐, 세이프가드 21년간 적용
대두유 옥수수유	○ 대두유 : 조유는 10년, 정제유는 5년 철폐 ○ 옥수수유 : 5년 철폐
장류	○ 된장, 춘장(8%) : 10년 철폐 ○ 간장(8%), 고추장(45%), 기타장류(쌈장,청국장) : 5년 철폐
소스류	○ 혼합조미료(45%) : 15년 철폐 ○ 인스턴트 카레(45%) : 5년 철폐 ○ 마요네즈(8%) : 10년 철폐 ○ 겨자(8%) : 즉시 철폐
빵류, 기타식품 류	○ 식빵, 건빵 등 빵류 : 5년 철폐 ○ 커피(생두), 홍차, 라면, 파스타, 아몬드 등 : 즉시 철폐
주류	○ 포도주(15%) : 즉시 철폐

	○ 맥주(30%) : 7년 철폐 ○ 스카치, 버본, 아이리쉬 위스키(20%) : 3년 철폐 ○ 데킬라, 보드카, 브랜디(20%) : 5년 철폐
--	---

□ 무역협정

-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.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됨.

○ EU의 FTA 정책

-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'지역 대 지역'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'지역 대 지역 협정'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음.

-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음.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'지역 대 지역 협정' 이외에 개별 국가와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,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, 상업적 동기 모두를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음.

- 이전까지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,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'정치적, 외교적 동기'에 의거하여 인근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왔던 것에 비해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

미,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 함.

○ EU의 FTA의 주요 특징

- EU는 안보, 외교,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적과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 하고 있으며, 추진 형태도 FTA, 경제협력협정, 안정화 협정,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음.

-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)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이 없으며,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함. 다만 WTO(세계무역기구)로부터 지역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협정 체결 시,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%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음.

- EU는 지난 2006년 10월 ‘신통상정책’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, 인도, ASEAN, 러시아, MERCOSUR,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협상 완료, 인도와는 협상 계획 중에 있음. 이외에도 EU는 ACP 국가, MERCOSUR, GCC 국가,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임.

- EU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과의 한-EU FTA 협상을 체결하고,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음. 협정 가서명에 따라 조기 발효가 기대되었으나 자국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2010년 9월 16일 EU특별외교 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 모두 한-EU FTA를 승인하였음.

- 2010년 10월 6일 협정문 정식 서명을 거쳐 2011년 2월 한-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(찬성 465표, 반대 128표, 기권 19표)되었으며 2011년 7월 정식 발효되었음.

- 한·EU FTA 발효 이후 1년 간 對EU 교역 경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,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. 발효 후 2011년 및 2012년에 걸친 1년 동안 전체적인 교역액은 한·EU FTA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-5.43%의 감소세를 보였고 그 원인으로는 수입의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및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내수수요 부진에 의한 수출이 감소했음을 들 수 있음.

< 한국-이탈리아의 무역협정 체결 내역 >

체결 일시	협정 내용
1965년 3월	무역협정(1965년 3월 서명)
1970년 6월	문화협정(1965년 3월 서명)
1982년 5월	경제협력협정(1982년 5월 서명)
1992년 6월	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(1989년 1월 서명)
1992년 7월	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(1989년 1월 서명)
2000년 11월	관광협력협정(2000년 3월 서명)
2005년 4월	사회보장협력협정(2000년 3월 서명)
2007년 4월	과학기술협력협정(2007년 4월 서명)
2011년 7월	자유무역협정(2011년 7월 발효)

○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

-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한-EU FTA(한국-유럽 연합 간 자유무역협정)를 따름. 현재 한-EU FTA는 2010년 10월 정식 서명되었으며, 2011년부터 발효될 예정임